



보험연구원
Korea Insurance
Research Institute

보 도 자 료

보도

2016. 12. 9(금) 10:00부터

배포

2016. 12. 8(목)

책임자

금융전략실
조재린 실장(3775-9034)

작성자

황현아 연구위원(3775-9047)

홍보담당

변철성 수석역(3775-9115)

총 4매

제목 : 보험연구원 「미래혁명 자율주행시대 해법은?」 토론회 개최

- 보험연구원(원장: 한기정)과 강효상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「미래혁명! 자율주행시대 해법은?」 정책토론회가 12월 9일(금)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됨.
- 김경환 변호사(법무법인 민후)는 제 1주제 「자율주행차 사회의 법적 과제」 발표를 통해 자율주행차의 정의, 시험운행 및 공중운행 관련 법적 과제를 검토함.
- 황현아 연구위원(보험연구원)은 제 2주제 「자율주행차 사고시 책임과 손해배상」 발표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 이후 교통사고 책임법제에 대한 방안을 제시함.
- 이후 정부, 학계, 법조계, 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자율주행시대 대비를 위한 법적 현황과 과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 정책수립방향을 제시함.

< 제 1주제: 「자율주행차 사회의 법적 과제」 >

자율주행차 정의, 시험운행 및 공중운행 관련 법적 검토 필요

- 미국 NHTSA 정책 및 캘리포니아주 관련 규정 참고 필요

- 미국 NHTSA는 2016. 9. 20. '연방자율주행차 정책'을 발표함.

- 위 정책 발표에 이어 2016. 9. 30. 캘리포니아주는 ‘공중운행규정’ 초안의 개정안을 발표함.
 - 미국의 정책 및 규정의 변화는 우리나라 자율주행차 관련 제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큼.
- 우리나라의 경우 자율주행차의 정의가 다소 모호한 바, 해외 입법례를 참조하여 자율주행차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.
- 자동차 기준의 정의 방법과 운전자 기준의 정의 방법 중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지, SAE 분류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등 검토 필요함.
- 자율주행차 시험운행과 관련하여, 미국의 NHTSA 정책 내용을 참조하여 앞으로 법적 과제를 검토할 필요 있음.
- 시험운행 주체에 대한 규제 필요성, NHTSA 성능 가이드스, 시험운전자 요건 및 교육, 사고보고의무, 자율모드 이탈 보고의무 등 NHTSA에서 제시하는 각종 시험운행 관련 제도를 우리 법제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.
- 자율주행차 공중운행과 관련하여, 캘리포니아주 공중운행규정상의 각 제도 도입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.
- 캘리포니아주 공중운행규정은 제조사의 사고 관련 주행기록의 보존 및 법집행기관에 대한 제출의무, 안전결함 보고의무 등을 정하고 있음.
 - 위와 같은 의무를 우리 법제에 도입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.
- 김경환 변호사는, 무엇보다 ‘길을 가로막는 법’이 아닌 ‘길이 되는 법’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한 법적 과제임을 강조함.

〈 제 2주제: 「자율주행차 사고시 책임과 손해배상」 〉

자율주행차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책임법제 도입되어야

- 자율주행차 제작사와 보유자 간 책임 배분의 문제가 관건

- 현행 교통사고 관련 책임법제는 자율주행차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점이 많음.
 - 현행 교통사고 책임법제는, 대인사고에 대해서는 자배법상 운전자 책임이, 대물사고에 대해서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적용되는 구조임.
 - 그러나, 완전자율주행시대가 도래하면 현행 책임법제로는 손해의 공평한 배분이 곤란하고, 피해자 구제도 약화됨.
- 본격적인 자율주행차 시대가 도래할 경우, 자율주행차 제작사가 새로운 교통사고 책임 주체로 인정될 필요가 있음.
 - 자율주행차 시대에는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는 제한적인 반면, 자율주행차 자체 하자에 의한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.
 - 자율주행차 제작사(하드웨어 제조사 및 소프트웨어 공급자)는 자율주행차 사고의 위험원을 통제, 관리하고, 나아가 사고 원인 규명 및 예방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.
 - 따라서, 제작사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사고 예방, 안전성 제고는 물론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법리상으로도 타당함.
- 구체적으로, 제작사의 보유자에 대한 책임부담 방안과(제1안), 제작사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직접 책임부담 방안이 가능함(제2·3안).
 - (제1안) 현행과 같이 자동차 보유자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1차적 배상책임을 부담한 후, 제작사에게 구상을 청구하는 방안
 - (제2안) 제작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하여 단독으로 직접 손해배상

책임을 부담하는 방안

- (제3안) 자율주행차 제작사 및 보유자가 공동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직접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방안

□ 황현아 연구위원은 새로운 책임법제 도입시 무엇보다 ‘교통사고 피해자 구제’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함.

-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, 관련 산업의 발전, 사고 원인 규명 및 예방, 불법행위책임 법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책임법제 도입이 필요함.
- 그중에서도 **교통사고 피해자 구제**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, 특히 실질적으로 피해자 구제 기능을 담당하는 **자동차 보험의 현실적 운영방안**이 반드시 함께 검토되어야 함.

<별첨> 세미나 발표자료 각 1부. 끝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http://www.kiri.or.kr>